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7조에 의한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금융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소개 및 제공
-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법인고객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과 연락처 등
- 개인고객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직업, 연락처, 성별, 국적 등

##### 나. 거래정보

- 계약정보 : 장기,자동차, 일반 재보험 및 생명재보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계약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계약체결 및 유지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
- 보상정보 : 장기,자동차,일반보험 사고 발생 및 보상과 관련하여 생성될 수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사고 및 보상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가입,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II. 신용정보 제3자 제공 관련 :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1. 제공 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능력정보
- 각종지급정보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 질병관련정보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은 제외)

#### 2.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계약의 적부 및 보험사고 조사, 재보험처리 정보수집 등
타 보험회사, 타 재보험회사, 계리법인 등	재보험계약의 적부 및 재보험사고 조사, 재보험 요율의 산출·검증,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특수건물 여부 확인 등
재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 및 제휴회사 (계약적부·보험사고 조사회사, 재보험 브로커사, 전산시스템 개발회사, 우편물 배달회사, 인쇄회사, 서비스 제공회사 등)	계약적부·보험사고 조사·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상담, 조사·연구(리서치),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소개 등

### III. 신용정보 보유 · 이용기간 및 파기 절차 · 방법

#### 1.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관련 보유·이용기간  
계약의 체결 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때까지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위의 정보 보유·이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관련 보유·이용기간  
계약의 체결 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때까지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관련 법률에 의해 보관이 허용되는 시기까지
- 중복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관련 보유·이용기간  
조회를 동의한 시점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해당계약 체결 시까지

#### 2.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사유 발생 및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파기
- 종이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
- 전산화된 신용정보는 기술적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 또는 물리적 파손

### IV. 신용정보 업무처리 수탁자 및 수탁내용

해당사항 없음

###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 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계약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관련 동의 철회 가능 (다만,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철회 불가하며, 계약의 유지·관리·상담·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
- 개인신용정보 제공 관련 동의 철회 신청은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서면 신청, 유·무선 신청(3702-6000)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 완료

### 2.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 가능
-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는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제공

### 3.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청구 가능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신청 시 직접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청 가능 하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정정 청구 시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 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제공하며,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 가능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무료확인 서비스 안내  
신용정보주체는 아래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www.nice.co.kr](http://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www.kisinfo.co.kr](http://www.kis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3445-5000, [www.sci.co.kr](http://www.sci.co.kr)
  - 한국개인신용(주) : 02-708-6000, [www.kcb4u.com](http://www.kcb4u.com)

### 3.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이용 및 권리행사 관련 문의처

- 당사 소관 업무부서 : 02-3210-63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9층 준법감시팀)
- 손해보험협회 : 02-3702-8796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6층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사부)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 VI.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1. 성명 : 황 찬
2. 부서 : 준법감시인
3. 연락처 : 02-3702-6000